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
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2. 10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가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(2010. 1. 25)에 따른 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에 따라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(안 별표)

□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천광역시 군·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(제2조 관련)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합 계	112	15	97	
중 구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연안동, 신흥동, 도원동, 을목동, 동인천동
나선거구			3	신포동, 북성동, 송월동, 영종동, 용유동
동 구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만석동, 화수1·화평동, 화수2동, 송현1·2동
나선거구			3	송현3동, 송림1동, 송림2동, 송림3·5동, 송림4동, 송림6동, 금창동
남 구	(17)	(2)	(15)	
가선거구			3	도화1동, 도화2·3동, 주안1동, 주안5동, 주안6동
나선거구			4	주안2동, 주안3동, 주안4동, 주안7동, 주안8동
다선거구			4	송의1·3동, 송의2동, 송의4동, 용현1·4동, 용현2동, 용현3동
라선거구			4	용현5동, 학익1동, 학익2동, 관교동, 문학동
연 수 구	(9)	(1)	(8)	
가선거구			4	옥련1동, 옥련2동, 동춘1동, 동춘2동, 동춘3동, 송도동
나선거구			4	선학동, 연수1동, 연수2동, 연수3동, 청학동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남 동 구	(14)	(2)	(12)	
가선거구			3	구월1동, 구월4동 남촌도림동, 논현동, 논현고잔동
나선거구			3	구월2동, 구월3동 간석1동, 간석2동, 간석4동
다선거구			3	간석3동, 만수2동, 만수3동, 만수5동
라선거구			3	만수1동, 만수4동, 만수6동, 장수서창동
부 평 구	(19)	(2)	(17)	
가선거구			4	부평1동, 부평4동, 부평5동 부개1동, 부개2동, 일신동
나선거구			4	부평2동, 부평3동, 부평6동, 산곡3동, 십정1동, 십정2동
다선거구			3	갈산1동, 갈산2동, 청천2동
라선거구			3	삼산1동, 삼산2동, 부개3동
마선거구			3	청천1동, 산곡1동, 산곡2동, 산곡4동
계 양 구	(11)	(2)	(9)	
가선거구			2	효성1동, 효성2동
나선거구			3	작전1동, 작전2동, 작전서운동
다선거구			2	계산1동, 계산2동, 계산3동
라선거구			2	계산4동, 계양1동, 계양2동

선거구명	선출인원			선거구역
	계	비례	지역구	
서 구	(14)	(2)	(12)	
가선거구			4	검단1동, 검단2동, 검단3동, 검단4동
나선거구			3	검암경서동, 연희동, 가정1동, 가정2동, 가정3동
다선거구			3	신현원창동, 석남1동, 석남2동, 석남3동
라선거구			2	가좌1동, 가좌2동, 가좌3동, 가좌4동
강 화 군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강화읍, 하점면, 양사면, 송해면, 교동면
나선거구			3	선원면, 불은면, 길상면, 화도면, 양도면, 내가면, 삼산면, 서도면
용 진 군	(7)	(1)	(6)	
가선거구			3	북도면, 덕적면, 자월면, 영흥면
나선거구			3	연평면, 백령면, 대청면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시행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직선거법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○ 공직선거법 제26조(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) ○ 공직선거법시행령 제3조(자치구·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 명칭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“별 첨”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직선거법

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②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③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

제26조 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시·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(이하 "시·도의원지역구"라 한다)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·시·군(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,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)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, 그 시·도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②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

④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

부칙

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②시·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공직선거법 시행령

제3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)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·시·군의 명칭 뒤에 가, 나, 다를 붙여 표시한다.